

의안 번호	506
----------	-----

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25.09.05.

전문위원 송세창

1. 제안 경위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」은 2025년 8월 14일 양순임 의원 외 9명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(의안번호 제506번) 동년 9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임.

2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기본계획의 수립 · 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나. 실태조사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- 다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,
-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,
- 「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,
- 「도로교통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도로과

라. 입법예고 : 2025. 8. 20. ~ 2025. 8. 26. (의견없음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성북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,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과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양순임 의원 외 9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,
- 본 조례안의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,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음.
 - ▶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¹⁾과 용어의 정의²⁾를 상위법에 따른 정의를 인용하였고,
 - ▶ 안 제3조(적용범위)는 성북구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함으로써 적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,
 - ▶ 안 제4조(구청장의 책무)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
 - ▶ 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³⁾는 구청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할

1) 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3조(이동권) 및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

2)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0호,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근거

3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」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「교통안전법」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통안전에 관한 중·장기 종합정책방향

2.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

수도 있음. 또한 교통안전 기본계획과의 연계가 가능하고,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다만, 조례안에 단순한 오기가 있어 제5조제3항의 인용 조문이 ‘제6조’가 아니라 ‘제5조’로 잘못 표기되어 있으므로,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.

〈 수정안 대비표 〉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「서울 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 례」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 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 ④ (생 략)</p>	<p>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「서울특 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」 제6조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</p>

- ▶ 안 제6조(실태조사)는 보도 점자블록 설치·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중복조사 방지를 위해 ‘통합실시’ 규정을 마련하였고, 결과는 기본계획 등에 반영토록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위탁실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.
- ▶ 안 제7조(보도 점자블록 현황 관리) 점자블록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는 규정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됨.

- ▶ 안 제8조(표준설치안)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」 [별표1]⁴⁾ 및 [별표3]⁵⁾에 따라 점자블록 설치시 관련 법령·지침에 따라 통일된 표준설치안을 적용해야 함.
- ▶ 안 제9조(협력체계 구축) 민·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관련 기관·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.

6. 종합 의견

- 2021년 12월,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여주시에 이어 전국적으로 26곳(서울시 자치구 6곳-노원, 양천, 용산, 중랑, 종로, 금천)이

4)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표1]

11. 점자블록

- 가.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주의하여야 할 위치나 안내 대상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.
- 나. 점자블록의 색상은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되,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노란색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한다.
- 다. 점형블록은 횡단지점, 대기지점, 목적지점,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,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지점을 알리거나, 선형블록이 시작·교차·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을 지시하는 용도로 설치한다.
- 라. 선형블록은 보행동선의 분기점, 대기지점, 횡단지점 등에 설치된 점형블록과 연결하여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, 보도에 연속적 또는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·유지하는 용도로 설치한다.

5)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표3]

마. 장애인 안전시설

- 1)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 경로를 안내하기 위하여 바닥에 적절한 폭과 요철을 갖춘 경계면 처리를 적용할 수 있다.
- 2)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의 해당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점자블록의 시설 기준은 별표 1 제1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유사 조례가 제정·운영되고 있어 시각장애인 보행권 보장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,

-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과의 정합성, 행정적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.
다만, 향후 시행과정에서는 소관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, 예산 확보 및 관리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.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집행 주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료됨.